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6. 13 선고 2023가단21218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유한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5. 16.

판 결 선 고 2023. 6. 1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체결된 2011. 1. 11.자 매매계약은 3,490,8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3,490,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22. 12. 26. 소외 주식회사 E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로부터 소외 회사가 D에 대하여 갖는 판결금채권(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소206627 대여금 청구의 소)을 양수하였고, 위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 D은 2022. 1. 11.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.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는 약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양수금채권 3,490,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3,490,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 : 피고의 선의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약의는 추정된다. 그러나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피고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점,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통상의 절차를 거쳐 체결된 점,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,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혼하게 되면서 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거주할 주거를 마련해야 했던 점, 피고는 2022. 2. 7. 이 사건 부동산에 딸과 함께 전입하여 거주 중인 점,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시세에 따라 정해진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, 피고의 약의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고, 달리 피고의 약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판사 최은주

목 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동

[도로명주소]

경기도 남양주시

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아파트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경기도 남양주시 잡종지 8757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철근콘크리트조 39.96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8998분의 31.01

끝.

